|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전 10:00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로169번길 19 본사 회의실3. 회의목적사항《부의 안건》제1호 의안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첨부1 참조)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첨부2 참조)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2024년 8월 2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로169번길 19비나에너솔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경철 (직인생략) |

**(첨부1) 제1호 의안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본금을 감소하는 사유**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1. **자본금 감소의 방법**

액면금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1. **자본금 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 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 자본금****(발행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식 | 2,565,229주 | 90% | 2024년 9월 22일 | 14,251,260,000원(2,850,252주) | 1,425,115,000원(285,023주) |

※ 기타 참고사항- 감자주식의 수,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등은 병합과정에서 단수주 처리에 따라 그 수량,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주 미만 단수주의 처리 방법 : 액면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사는 상법 제438조 2항, 동법 제439조 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여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진행함.1. **자본금 감소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8월 19일
	* 구주권 제출 공고일: 2024년 8월 20일
	* 구주권 제출 기간: 2024년 8월 21일 ~ 2024년 9월 21일
	* 감자기준일: 2024년 9월 22일
2. **기 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첨부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  |  |
| --- | --- | ---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이유** |
| **제9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165조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8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간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주식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9조 (신주인수권)**① (종전과 동일함)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2 및 정관 제10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④ (종전과 동일함) | - 현행법 내용 반영 및 제3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을 변경함- 오기 정정함 |
| (신설) | 부 칙<제12차 개정 2024년 08월 19일>**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8월 19일부로 시행한다. |  |